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541445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우송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5. 11. 13.

판결 선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4. 7. 4.까지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학교'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상면태봉2리 지상 서강대학교 현리 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3. 길건설 주식회사(이하 '길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083,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은 2013. 4. 23.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 공사명 : 현리캠퍼스 연수원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2리 서강대학교 현리 캠퍼스
4. 공사 기간 : 착공 2013년 4월 23일
준공 2013년 10월 30일
5. 계약 금액 : 1,08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계약보증금 : 108,350,000원

[일반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1 원고와 길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길건설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길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길건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길건설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7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길건설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길건설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1 원고 또는 길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길건설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 파산 등 길건설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5 원고 또는 길건설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기사항]

4. 계약의 해지

원고는 길건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일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길건설의 능력으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피고는 2013. 4. 26. 길건설과 보증금액은 108,350,000원, 보증기간은 2013. 4.23.부터 2013. 10. 30.까지,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하여 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고 한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2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1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한다.

제3조(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한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증서 사본
2. 계약관련 서류 및 계약해지 문서
3. 기성관련서류(타절정산서, 기성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6조(보상범위)

1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

2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제11조(면책조항)

1 조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단서 생략)

2.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라. 원고는 2013. 10. 21. 길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길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의무가 있음에도 2013. 8.3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의 수행을 포기하였다.

이는 길건설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길건설의 능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2013. 9. 11. 길건설에 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 특기사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길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보증기간
내인 2013. 9.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약관 제6조에 의하여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길건설이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직접 시공하며 138,579,458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금액은 108,35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전액인 108,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길건설이 2013. 8. 31. 원고에게 보낸 공사포기각서에 "귀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 길건설이 원고에게 금회 기성금액은 93,500,000원, 정산금액은 132,000,000원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3. 9. 2. 길건설에게 당해 기성금 93,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점, 원고가 2013. 9. 11. 길건설에게 "공사포기 요청을 승인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길건설의 공사포기 및 정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 9.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다. 합의해지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호반건설 주식회사(이하 '호반건설'이라 한다)와 길건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현장관리, 그와 관련된 전체공사에 관한 시공참여약정을 한 점, 길건설은 2013. 9.2. 원고와 당해 기성금을 93,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액면금 9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길건설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즉시 호반건설 앞으로 배서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길건설은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공사를 다시 호반건설에 시공참여약정이라는 형태로 일괄재하도급한 것이다.

길건설의 호반건설에 대한 일괄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금지)과 제3항(재하도급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피고가 길건설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일괄재하도급을 하여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실제 공사수행 주체가 길건설이 아니라 호반건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일괄재하도급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길건설의 묵시적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길건설이 정상적으로 하도급받아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길건설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길건설의 기망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3) 피고의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는 "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된다"고 정하였다.

길건설은 2013. 4. 23.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호반건설에 일괄재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4조 제5항은 "길건설이 하수급받은 본 공사를 제3자에게 일괄시공케 하였을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수령하기 전인 2013. 4. 26. 이미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일괄재하도급하여 하도급계약상의 계약해제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된다.

피고의 보증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일괄재하도급하여 주계약의 실제 이행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보증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보증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면책된다.

설령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A(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서 손해액으로 산정된 간접비와 이윤은 원고의 실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보증금지급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길건설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귀사는 피고에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길건설은 2013. 8. 31.

원고에게 "3.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없어당초의 계약 목적물의 완공이 불가능한바, 4. 부득이 건설공사 계약을 중단하고 공사포기를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같은 날 원고에게 "귀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상기 공사에 대하여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하기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오니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 포기와 관련한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귀사 또는 상기 현장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나 추가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길건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에 추가하여 "귀사는피고에 공사계약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별개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9. 11. 길건설에게 "길건설의 사유로 인한 공사포기 승인을 요청하니 이를 승인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길건설은 원고에게 교부한 공사포기각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부탁하는 취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12. 길건설에게 보낸 확인서에 "길건설의 사유로 인하여 2013. 8. 31. 계약을 해지함.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길건설의 계약보증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계약보증을 청구하지 않는 다. 상기와 관련한 손해 발생 시 이를 길건설에 통지하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을시 계약보증이행청구를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길건설은 당초 원고에게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고 통보한 점, 길건설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갑 제4호증의 2)에는 공사포기와 관련한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길건설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점, 원고는 길건설에게 길건설이 자신의 사유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점, 길건설이 다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의 내용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는 부분은 길건설이 자신의 사유로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일뿐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길건설이 당시 위 보증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길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길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길건설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길건설의 능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13. 9. 11. 길건설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계약 특기사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길건설에게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다음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길건설이 원고에게 미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길건설에게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길건설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바로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이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길건설과 호반건설이 체결한 시공참여약정 제3조에서 길건설과 호반건설은 공사의 범위를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 및 현장관리, 상기공사와 관련된 도면, 시방서 및 내역에 포함된 전체공사(인력, 장비, 자재 등), 길건설은 본 공사 관련 모든 공정관리, 호반건설은 본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길건설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른다고 정하였고, 제7조에서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철근 및 레미콘 자재 및 용전, 용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와 길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3. 4. 23. 체결되었음에 반하여 길건설과 호반건설 사이의 위 시공참여약정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0일이 경과한 2013. 6. 10.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사자재와 기계장비를 모두 길건설에서 제공하였고, 길건설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지휘, 감독한 점, 길건설과 호반건설의 시공참여약정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뒤에 체결된 점에 비추어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길건설이 호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길건설이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호반건설에게 배서하였으므로 호반건설이 일괄재하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호반건설이 길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재하도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금의 액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6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이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 손해액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길건설이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즉, 원고가 길건설이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길건설이 기시공한 부분의 기성금액,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 잔여공사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잔여공사금액에서 미시공금액을 공제한 추가지출금액은 138,579,458원(= 1,123,376,238원-984,796,780원)이다.

구분	① 계약금액	② 기성금액	③ 미시공금액	④ 잔여공사금액	⑤추가지출금액 (④ - ③)
공사금액	985,000,000	89,730,200	895,269,800	1,021,251.125	125.981.325
부가가치세	98,500,000	8,973,020	89,526,980	102,125,113	12.598,133
합계	1,083,500,000	98,703,220	984,796,780	1,123,376,238	138,579,458

피고는 추가지출금액에는 길건설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비도 아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실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추가지출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길건설이 작성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내역서에는 간접비의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길건설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재료비나 노무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길건설과 같은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게되고 원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단일 공종으로 관리하던 업무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서 각각 관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필요한데 잔여공사금액의 일반관리비, 이윤은 그와 같이 추가되는 간접비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지출금액에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지출금액 중 보증금액의 범위 내인 10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7.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특례규정'이라 한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다
값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민석, 판사 김태환, 판사 오현순